# Ⅰ. 검토 배경

■ 최근 **연말정산** 과정에서 국민들의 **세 부담이 크게** 증가되었다는 보도로 2014년 소득세 개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.

- 정부는 2013년 8월 세법(2014년 적용) 개정 당시 **중산층[1] 이하**인 근로소득자는 세제가 개편되더라도 **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**고 주장함.
- 그럼에도 2015년 1월 연말정산 과정에서 **상당한 세 부담**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 세제 개편의 **정당성 논란**이 야기됨.

■ 세제 개편 논란의 핵심은 연금저축, 의료비, 교육비 등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던 공제항목이 **세액공제로 전환**되어 '**실질적인 중산층**'[2]의 **세 부담도 증가**한다는 데 있음.

- 즉,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, 과세표준소득(이하 '과표소득') 구간 조정[3] 등으로 **실질적인 증세 효과**가 발생함.

■ 이에 따라 본고는 소득계층별로 **소득세제 개편 전후**의 **세 부담 변화효과**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득세제 **개선 방향**을 제시하고자 함.

---

1) OECD의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소득자로 보며, 2013년 기준으로는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로 보고 있음(2013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). 2014년 기준으로는 총급여 5,700만 원 이하로 보고됨(2014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).
2) 정부의 중산층 기준은 총급여 5,500만 원(과표소득 기준 4,600만 원 이하)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, 현실적으로 과표소득이 4,600만 원을 조금 넘는 소득자(예를 들어 총급여 6~7천만 원)로 정의함.
3)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인 과표소득의 최고 구간을 3억 원에서 1.5억 원으로 조정함.